

#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전문경력관 김민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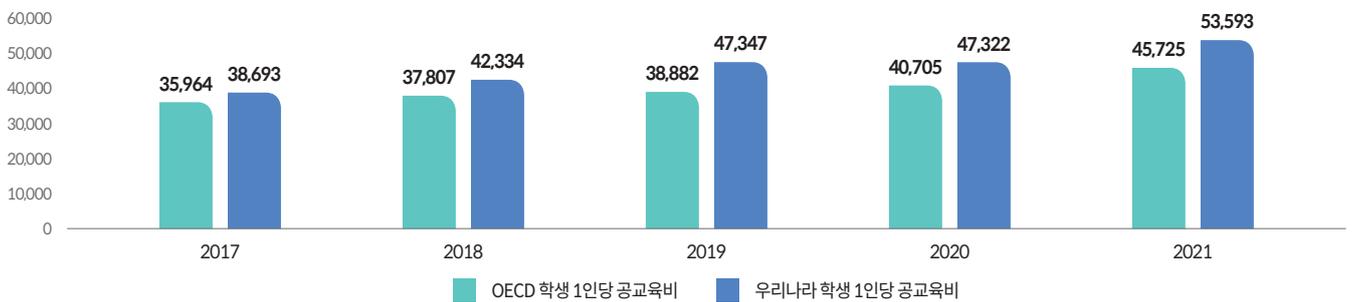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24년에 29조 원이 넘었으며, 초·중·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이른다. 이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과 공교육 현황, 유아대상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 초·중·고 학생 사교육과 공교육 비교

통계청,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24년 513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 원에서 약 29조 2,00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늘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2024년 80%이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초·중·고 학생 공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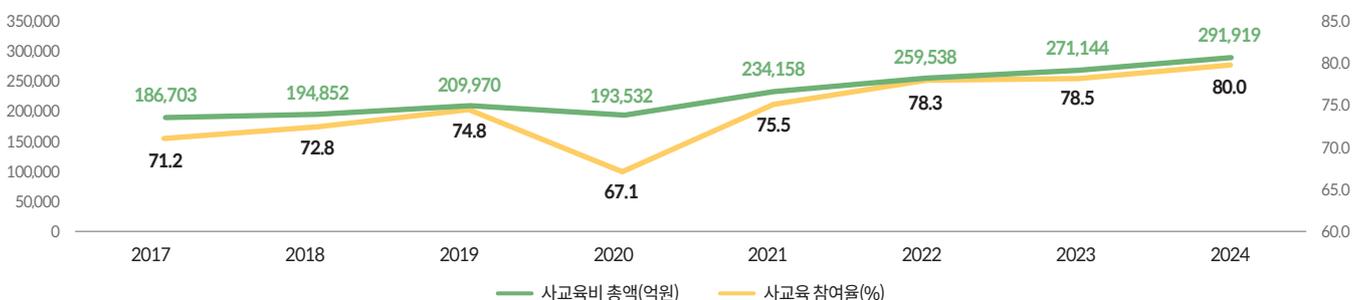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e-나라지표)

###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와 참여율

(단위: 억 원, %)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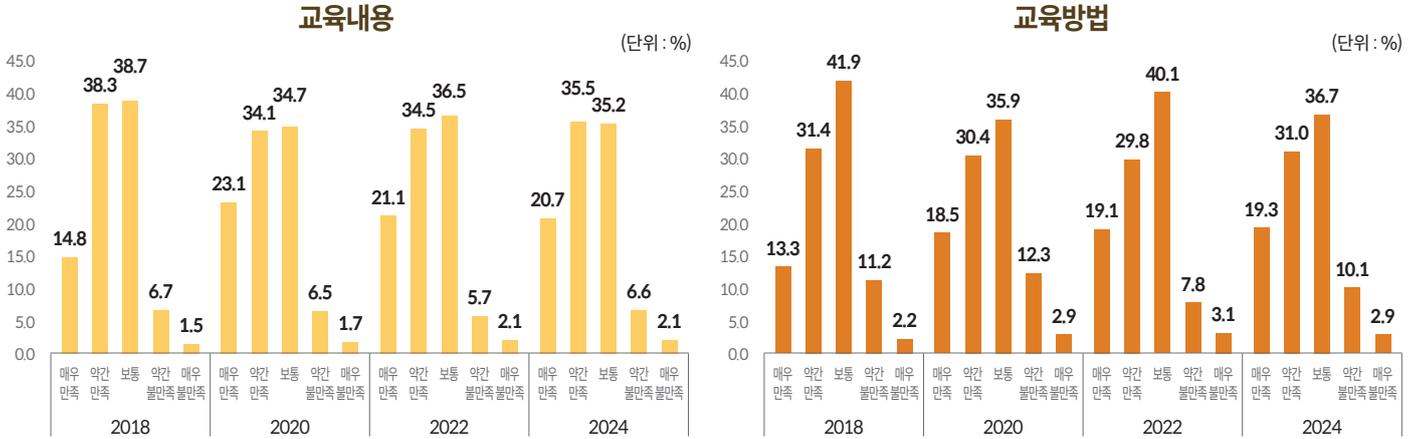
\* 2020년도 통계 수치가 대체로 낮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임.

\*\* OECD 「Education at a Glance」의 공교육비는 2021년도까지만 발표되어 있음.

※ 『Data&amp;Law』에 수록된 기관 제출자료는 「국회도서관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 중·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2018~2024)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50%대의 만족도와 8%대의 불만족도를 보이고,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40%대의 만족도와 10%대의 불만족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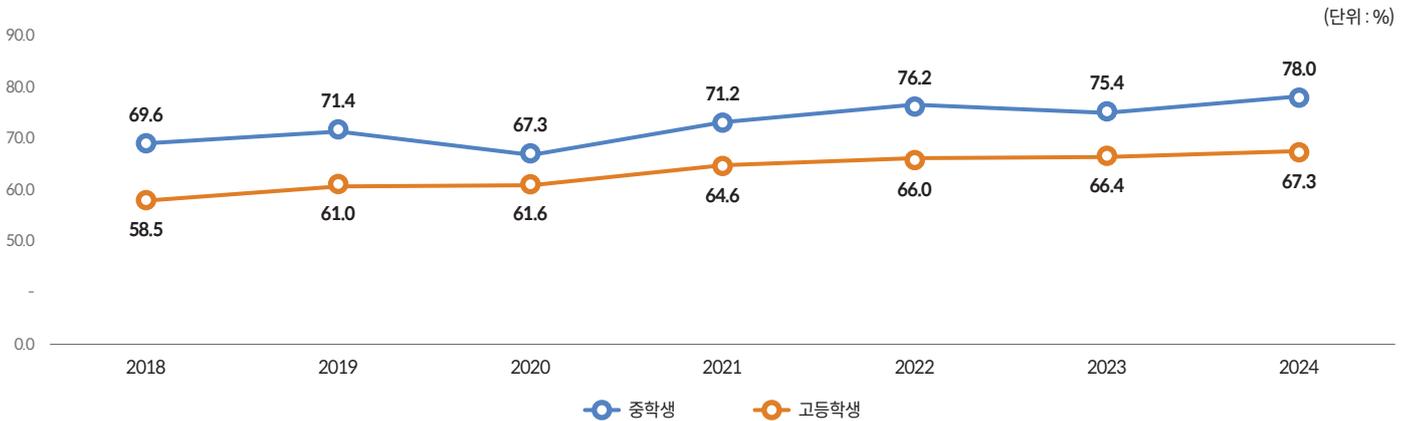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교육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만족도이고, 교육방법은 이론, 실습 등 수업 지도 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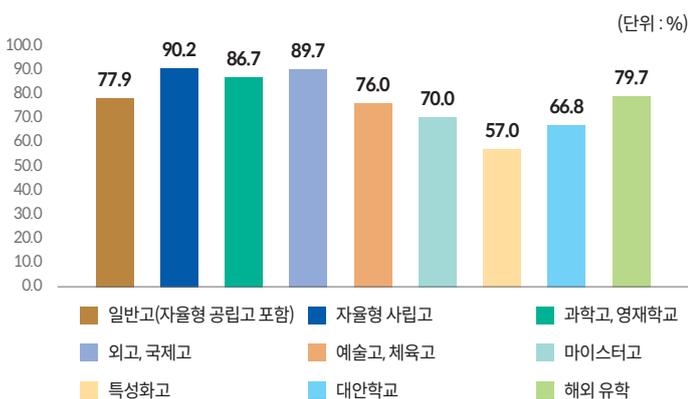
## 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매년 상승추세이다.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다른데,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외고 등을 희망하는 경우 90% 안팎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며, 상위 10% 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매년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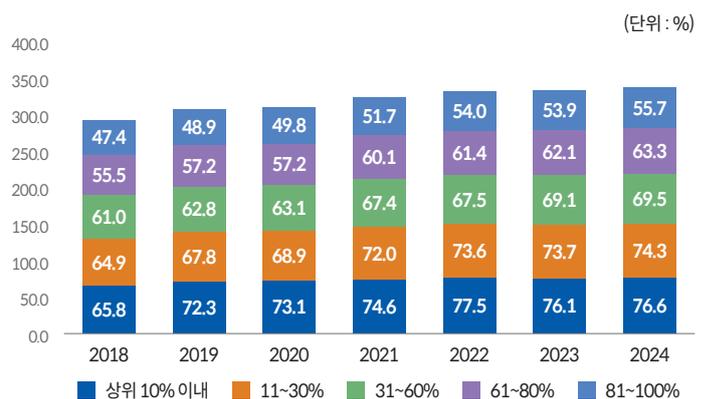
### 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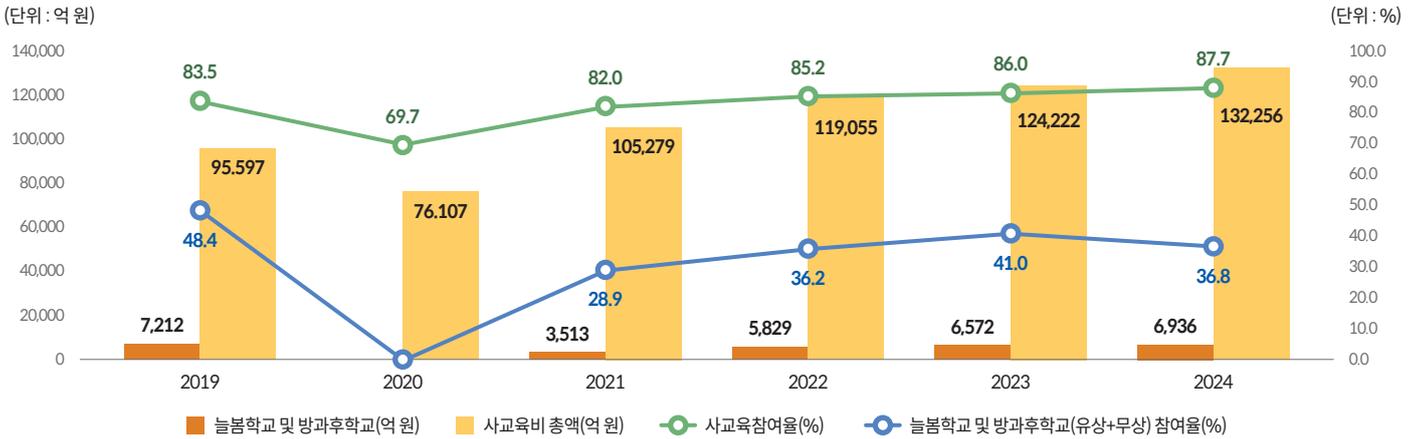
###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 참여율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초등학생 대상 돌봄과 사교육

2024년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025년도에는 초2까지, 2026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100% 늘봄학교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이후 초등학생 돌봄(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증가추세에 있지만(2024년 36.8%),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 82%에서 2024년 87.7%로 대다수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과 사교육비 총액을 비교하면, 2024년도 기준 약 7,000억 원의 돌봄비용에 비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13조 2,300억 원으로 약 20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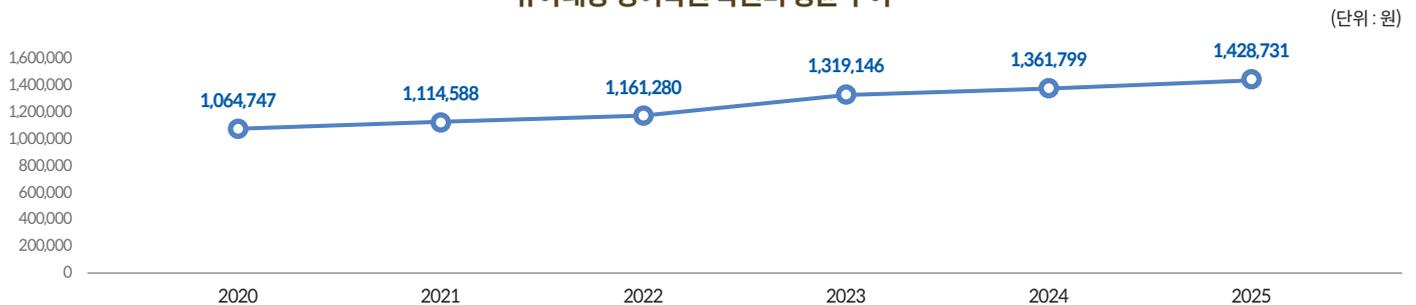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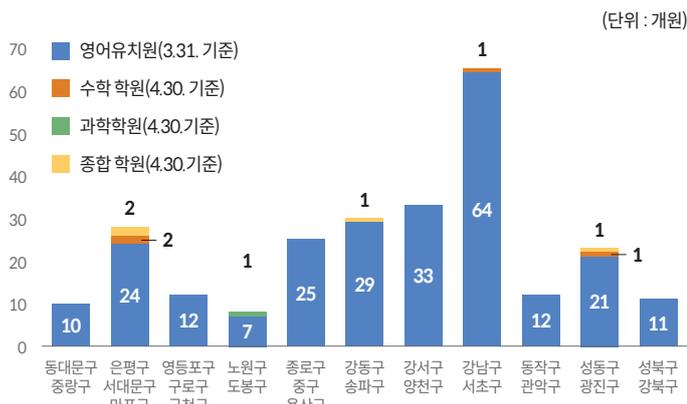
### 2025년 서울시 유아 사교육비 현황

우리나라 유아 대상 사교육은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약 143만 원으로 2020년 106만 원보다 약 35% 늘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한 학원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구가 65개로 타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영어특성화 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 현황도 모든 자치구에서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에서의 비중이 크다(5.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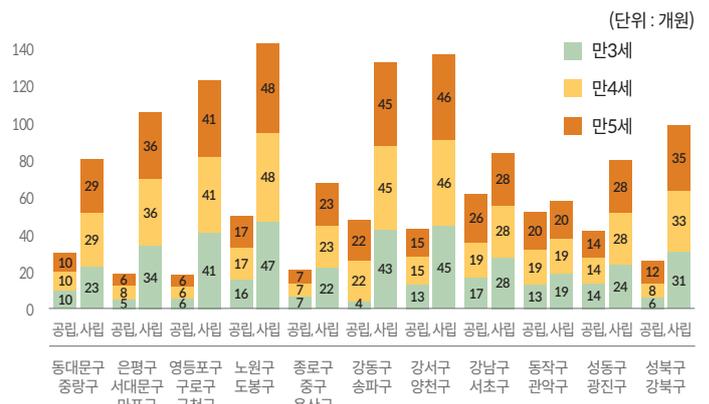
####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평균 추이



#### 유아대상 영어, 수학 및 과학, 종합학원 현황



####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유치원 현황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2025.6)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0. 2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련법률안 (2025년 6월 25일 기준)

법률안명	대표발의(발의일자)	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2204418] (2024.9.30.)	•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의원 [2200949] (2024.6.26.)	•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b>세액 공제 대상에 초등학교생 교육비를 포함</b> 하도록 하고 <b>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b> 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 하려고 함.
	임광현의원 [2203676] (2024.9.5.)	•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유아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태권도학원 및 미술·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소득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b>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b> 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2208255] (2025.2.18.)	• 초등학교생이 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만 인정되고 학원 등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초등학교생 자녀의 돌봄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어 있음. 이에 <b>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b> 하고 <b>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b> 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Data & Law

국회도서관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내법률정보과(02-6788-4764)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